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
----------	----

제출년월일 : 1999. 10. 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통·반 감축('98.12.26)에 따라 통반 확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남·여로 구분되어 있는 통장 위촉 조항을 폐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통·반 확정기준 확대 (제3조)

1개반이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하는 것을 20내지 100세대이하로 구성하도록 하며 1개통이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3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통·반장의 위촉 기준중 남·여 구분 조항 폐지 (제5조)

통·반장의 위촉기준에 남자는 30세이상 65세까지이며, 여자는 30세이상 50세이하까지로 되어 있어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으므로 구분 조항은 폐지토록 함.

다. 동 기능전환 시범동의 반상회 건의사항처리 및 운영실적평가 조항 삭제 (제9조, 제10조)

시범동의 반상회 사무가 구에 이관됨에 따라 “건의사항 처리” 및 “운영실적평가” 조항을 삭제토록 함.

3. 관계법령

가. 여성발전기본법

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확정기준) 본문중 “반의”를 “통·반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반은 20내지 30가구를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를 “반은 20세대 내지 100세대로 구성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있다.”로 하며 동조 제2호중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되,” 를 “통은 3개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되,”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1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를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자중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를 “반장은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동장은” 를 “동장(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동장은” 를 “동장(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제3조(확정기준) <u>반의</u> 확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반은 <u>20내지 30가구로</u> 구성한다. 다만 <u>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 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u></p> <p>2. 통은 <u>4개내지 6개반으로</u>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생략) ②(생략)</p> <p>1.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u>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u>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u>51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서</u>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u>30세이상 50세 이하의</u>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p>	<p>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 -----.</p> <p>1. 반은 <u>20세대 내지 100세대로</u>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2. 통은 <u>3개내지 10개반으로</u> 구성하되, ----- -----.</p> <p>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1.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u>30세이상 65세이하자중</u>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p>

현행	개정
<p>2.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p> <p>3.(생략) ③(생략)</p> <p>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동장은 --- ----- -----</p> <p>②(생략) ③(생략)</p> <p>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동장은 ----- ----- -----</p> <p>②(생략)</p>	<p>2. 반장은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p> <p>3.(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동장(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은 ----- ----- -----</p> <p>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동장(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은 ----- ----- -----</p> <p>②(현행과 같음)</p>